

* 총 평

(남부 행정고시 헌법 박철한 강사)

I. 전체 난이도

더러 어려운 지문들도 있었으나 최근 헌법 문제가 상당히 지엽적이고 법령 위주로 출제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국가직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기본서와 모의고사등을 충실히 보았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최근 시험과 비교할 때는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또 약간 어려운 지문들이 보여도 정답 지문이 쉬운 경우가 많았다.

II. 특징

1. 역시 최근 판례의 비중이 높았다.

최근 헌법 문제의 큰 특징중의 하나이다. 14년도 상반기 판례를 비롯하여 최근 3개년 판례가 꾸준히 높은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도 헌법시험을 대비하는 학생들은 최근 3개년 판례는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임해야 할 것이다.

2. 판례위주로 많이 출제

상대적이긴 하지만 과거 부속법령이 상당히 여러개 출제되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법령 문제가 빈도도 약하고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다. 따라서 이는 헌법만으로는 난이도가 낮아지는 이 유가 될 수 있다.

3. 판례의 난이도 상승

상대적이긴 하지만 사법시험에서 보였던 판례들이 여러개 출제되었다. 판례가 많이 출제되다 보니 질적으로는 최신판례의 비중이 늘고 있고, 양적으로는 과거의 판례들도 좀더 넓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 수험생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넓힌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양을 보지 말고 사법시험등에서 기출되었던 판례중심으로 보는 것이 양을 조절하는데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III. 향후 지방직을 대비하여

1. 기존 수험생들

1년이 금방인 것처럼 2-3달은 정말 빨리 지나간다. 양을 늘리기 보다는 지금 하던 것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방직은 보통 국가직보다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번 헌법시험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고득점을 바라다면 부속법령 준비를 꾸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몇 개월이 남지 않은 지방직이니 헌법의 경우에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모의고사등을 반복하여 문제적응력을 기르고 배웠던 것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 9급에서 7급으로 전향하려는 학생들은

항상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마음이 급하다고 기본강의를 듣지 않고 핵심정리와 같은 집중강의 또는 모의고사등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조급할수록 항상 기본에 충실하여야 한다.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문제는 연습만 하면 되니 향후 지방직을 생각하려는 학생들은 꼭 기본강의를 듣

고 교재를 반복한다면 남은 시간이라면 충분히 지방직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1 헌법상 평화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는 '마라케쉬협정'을 조약이라고 하였으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에 체결된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에 대해서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②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될 수 없다.
- ③ 헌법은 외국인에 대하여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은 상호주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 ④ 제7차 개정헌법 전문(前文)은 평화통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현행 헌법까지 이어지고 있다.

1 정답 ②

해설 : 쉬운 문제이다. 조약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로 보아야 한다.

- ① 따라서 마라케쉬협정에 의하여 관세법 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거나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조약 제1477호)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헌재 2001.3.21, 99헌마139).
- ③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의 경우 상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 ④ 평화통일에 관한 내용은 제7차 개정헌법에 처음 규정되었다.

2 주권 및 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민의 개념을 이념적 통일체로서 전체 국민으로 파악할 때, 국민은 주권의 보유자이지만 구체적인 국가의사결정에 있어서 주권의 행사자는 국민대표가 된다.
- ② 우리 헌법상 자유위임은 국민대표가 자신을 선출한 국민의 의사에 종속되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상 양심에 기속됨을 근거로 한다.
- ③ 장 보댕(J. Bodin)은 국민주권이론을 체계화하였고, 이를 통하여 왕권을 제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 ④ 국회구성권이란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오늘날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

2 정답 ③

해설 :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대부분 수험생들의 경우 외국 학자들이 나오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누군가에게는 쉬운 문제였고 누군가는 상당히 고생했을 거 같다. 보댕과 홉스가 대표적인 군주주권론자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골랐을 것이며, 다른 지문들도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② 기속위임이 국민의 의사에 종속되고, 자유위임은 국민의 의사에 종속되지 않는다.
- ③ 보댕은 홉스와 더불어 대표적인 군주주권론자이다.

- ④ 국회구성권이란 기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헌재 1998.10.29, 96헌마186)

3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진정 소급입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거에 시작된 구성요건사항에 대한 신뢰는 더 보호될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심사는 장래 입법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더 강화되어야 한다.
- ②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③ 법령불소급의 원칙은 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법률은 위헌이지만, 체계정당성에 위반되는 법률이라는 이유 때문에 바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정답 ②

해설 : 자주 출제되는 지문들이다. 체계정당성에 위배된다고 해서 무조건 위헌인 것이 아니고, 유인인지 기회를 활용한 것인지에 따라 신뢰의 보호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은 자주 나오는 지문이다.

- ① (헌재 2001.2.22, 98헌바19)
- ②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 :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헌재 2002.11.28, 2002헌바45)
- ③ 즉 진정 소급입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지만 계속 중인 사실이나 이후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되고 있는 법을 적용하는데 제약이 없다.
- ④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 작용이 체계정당성에 위반한다고 해서 곧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합헌이 될 수도 있다(헌재 2004.11.25, 2002헌바66).

4 국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민투표의 대상으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명시한 것은 현행 헌법부터이다.
- ② 대법원은 국민투표무효의 소송에서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할 수 있다.
- ③ 대통령은 헌법 제72조상의 국민투표부의를 행사하여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 ④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다.

4 정답 ④

해설 :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권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대

통령이 부의한 경우에 가능한 임의적인 기본권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으나, ①번 지문이 헌정사여서 암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다만 헌법 제72조의 역사가 제2차 개헌때부터라는 것을 생각해도 오답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 ① 현행헌법이 아니라 제5공화국 헌법 내용이며, 현행 헌법은 이를 계승하였다.
- ② 대법원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국민투표법 제93조)
- ③ 제72조로 헌법을 개정할 수는 없다.
- ④ 제130조의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국민투표이나, 제72조의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하다.

5 선거권 및 선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 ② 평등선거원칙이라 함은 모든 선거인이 1표씩을 가지는 투표의 수적 평등을 의미하지, 모든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한 것이 되게 하는 투표의 결과값 내지 성과가치의 평등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 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
- ④ 자유선거원칙은 선거의 전 과정에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와 의사실현의 자유를 말하는바, 구체적으로는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만을 의미할 뿐이지 선거운동의 자유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 정답 ③

해설 : 최신판례 그것도 14년도 판례가 출제되었다. 중요판례중심으로 출제되어 정답 고르는 것이 어렵지는 않아 보인다.

- ①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헌재 2014.1.28, 2012헌마409)
- ② 오늘날에는 모든 국민들이 1표씩을 가지기 때문에 투표의 결과값 내지 성과가치의 평등이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구 획정이 중요하다. (헌재 2001.10.25, 2000헌마92)
- ③ 선거인 스스로가 직접 대의기관을 선출하는 것을 뜻한다.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의원의 선출 뿐만 아니라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서 직접 결정될 것을 포함하는 원칙이다. (헌재 2001.7.29, 2000헌마91 등)
- ④ 자유선거의 원칙은 입후보의 자유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의 자유까지 의미한다.

6 기본권 충돌 및 그 해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종립학교는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종교교육의 자유를 누린다.

- ② 언론의 자유와 반론보도청구권이 충돌하는 경우 반론보도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진실이어야 한다.
- ③ 표현권은 표현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고, 이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결국 표현권은 표현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된다.
- ④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어서 노동조합에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6 정답 ②

해설 : 반론권과 정정보도는 기본적 차이만 알아도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로 보인다.

- ① (대판 2010.4.22, 2008다38288)
- ② 반론권의 행사에는 언론기관의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는 불문하고 인정되며, 언론기관의 사실상의 주장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언론기관의 논평·비판 등의 가치판단에 대하여는 반론권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반론권은 그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따지거나 허위보도의 정정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반론보도는 허위와 무관하며, 정정보도는 허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는 잘못된 내용이다.
- ③ (헌재 2004.8.26, 2003헌마457)
- ④ 유니온샵(Union Shop) 조항의 위헌 여부(헌재 2005.11.24, 2002헌바95 등)

7 죄형법정주의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의 금지행위를 규정한 구 학교보건법제6조 제1항 제14호 중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 부분은 죄형법정주의 또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②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처벌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에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 ③ 집행유예의 취소 시 부활되는 본형은 집행유예의 선고와 함께 선고되었던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한 결과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무관하다.
- ④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동일인이 새로이 부과된 예비군 훈련을 또 다시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7 정답 ②

해설 : 이 경우도 이중처벌은 형벌만을 의미하지 모든 처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인 지문으로 어렵지 않아 보인다.

- ① (헌재 1999.7.22, 98헌마480), 보통 미풍양속의 경우에는 합헌으로 판례는 보고 있으나, 언론·출판쪽에서만 위헌으로 보고 있다. (헌재 2002.6.27, 99헌마480)
- ② 여기서의 처벌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 처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헌재 1994.6.30, 92헌바38)

- ③④ 이중처벌 금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형벌이 이중으로 부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③④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8 기본권의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근로의 권리의 내용 중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 ② 서울특별시의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 ③ 직장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④ 정당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8 정답 ④

해설 : 정답지문은 좀 난이도가 있고 다른 지문들이 기본 지문들이다. 미국산 쇠고기와 정당이라는 단체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지 않으며, 이 지문이 조금 생소해도 다른 지문들 때문에 정답 고르기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 ①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헌재 2007.8.30, 2004헌마670)
- ② 공법인은 공권력의 행사주체로서 기본권을 실현하고 보호해야 할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적용대상인 수범자이지, 기본권을 주장하는 주체로서의 기본권의 보유자는 아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서울시 의회는 공법인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③ 직장선택의 자유는 외국인도 향유할 수 있다.
- ④ 이 사건에서 침해된다고 하여 주장되는 기본권은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것으로서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진보신당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단체는 위와 같은 기본권의 행사에 있어 그 주체가 될 수 없고, 또한 청구인 진보신당이 그 정당원이나 일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됨을 이유로 이들을 위하거나 이들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 진보신당은 청구인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헌재 2008.12.26, 2008헌마419)

9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취임 전에 대통령당선인의 직무수행으로 한 위헌. 위법행위는 대통령 취임 후 그에 대한 탄핵의 사

유가 된다.

- ② 대통령당선인이 사망한 경우 이는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고, 그 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 ③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가진다.
- ④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대통령 임기 개시일 이후까지 존속할 수 있고, 인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서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9 정답 ①

해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기 개시일 이후 30일까지 지속된다는 지문은 자주 출제된 지문이며 정답 지문 즉 취임 전의 행위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위낙 중요한 판례 지문이다.

- ① 사생활의 행위, 취임 전이나 퇴직 후의 행위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현직자를 원칙으로 하여 전직(前職)시의 행위는 배제한다(헌재 2004.5.14, 2004헌나1).
-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헌법 제68조 제2항)
- ③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④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옳은 지문이다. 임기 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10 국회의 위원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본회의에서 복잡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의사진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ㄴ. 당리당략적인 의사방해를 용이하게 하며, 국회의원들의 폭넓은 국정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국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역기능의 측면이 있다.
 ㄷ.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법이 명시한 상설 특별위원회이다.
 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른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개설행위는 그 요청이 위헌이나 위법이 아닌 한, 해당 국회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10 정답 ④

해설 : 선택지가 그리 어려운 지문들로 구성되지 않았다. 크게 문제 없이 풀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 ㄱ : 의사진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ㄴ : 폭넓은 국정심의 기회를 박탈하고, 본회의를 형식화 한다는 역기능의 측면이 있다.
 ㄷ : 국회법 제45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46조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규정되어 있다.
 ㄹ :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1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제도의 헌법적 기능을 고려하면 무소속 후보자와 정당소속 후보자 간의 합리적이고 상대적인 차별은 가능하나 정당 후보자에게 별도로 정당연설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다.
- ②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자도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교부 및 지지호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 중 ‘배우자’ 관련 부분이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모든 경우를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서 나오는 공익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크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④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외국인은 누구라도 해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1 정답 ①

해설 : ①번 판례는 혼한 판례는 아니다. (기본서 79페이지) 그리고 최신판례도 출제되어 쉽지 않을 수도 있으나, ②번 판례는 원체 중요한 최신판례였고, 나머지 지문은 어렵지 않았으며 ①번도 교재를 잘 읽은 학생들이라면 잘 풀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①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이 정당추천후보자에게 무소속 후보자보다 더 많은 연설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연설회의 개최시기 등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준 것은 결국 무소속후보자와 정당추천후보자에게 선거연설회를 허용하는 기회 등의 등가성을 비교하여 볼 때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심히 불평등한 것이다. (헌재 1992.3.13, 92헌마37 등)
- ②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까지 보태어 명함을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별효과를 지나치게 커지게 한다. (헌재 2013.11.28, 2012헌가10)
- ③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까지 적용되는 한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헌재 2008.5.29, 2006헌마1096)
- ④ 현재 개정 공직선거법에서는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에 한해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권을 긍정하고 있다.

12 행복추구권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휴식권, 문화향유권, 육아휴직신청권 등이 있다.
- ②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로 새롭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체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 또한 특별히 인정되어야 한다.
- ③ 지역 방언을 자신의 언어로 선택하여 공적 또는 사적인 의사소통과 교육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한 내용이다.
- ④ 사회복지법인의 법인운영의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사적자치권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12 정답 ①

해설 : 사법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문제가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

되었다. 또 ③번 지문도 약간 헛갈릴 수 있는 문제 지문으로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었나 싶다.

- ① 사법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다. 양육권은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육아휴직권은 법률상의 권리이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권은 틀린 지문이다. (헌재 2008.10.30, 2005헌마1156)
- ③ 이 지문은 조심해야 한다. 주문이 기각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또한 헌법상의 기본권이나 표준어로 교과서를 기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에는 포함된다. 내용에도 들어가지 않으면 각하가 되어야 한다.
- ④ (헌재 2005.2.3, 2004헌바10)

1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행정규칙 등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 ③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법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기기법 조항은 그 위임사항이 업무정지기간의 범위에 불과하고 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임의 정도가 완화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④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명령 또는 규칙이라 함은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이른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 또는 규칙을 의미하므로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사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한 훈령은 여기서 말하는 명령 또는 규칙이라 볼 수 없다.

13 정답 ③

해설 :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다. 나머지 지문은 쉽지만 ③번 지문이 조금 까다롭다. 다만 최근 3개년 판례가 출제가 잘 된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공부하였다면 풀 수 있었던 문제로 보인다. (저자의 3개년 판례 수록)

- ① (헌재 2001.4.26, 2000헌마122)
- ② 이를 법령보충 행정규칙이라 하며 이는 주로 고시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헌재 2007.3.6, 2007헌마241)
- ③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법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기기법 제32조 제1항 부분은 헌법 제75조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재 2011.9.29, 2010헌가93)
- ④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사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한 훈령은 여기서 말하는 명령 또는 규칙이라 볼 수 없다.

14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② 서울특별시장과 중소기업청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한다.

- ③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④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이 대리하여 출석하고, 대리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14 정답 ③

해설 : 국무회의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쉽지는 않은 문제였다. 다만 의결 정족수를 암기하는 것은 기본 내용으로 국무회의와 대법원이 반대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 하였다. 또 책에도 ①②나와 있어서 (기본서 668페이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 ①② 국무위원은 아니더라도 의결권 없이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공무원 :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 ③ 의결의 절차를 취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무회의의 규정 (대통령령) 제6조] .
- ④ [국무회의의 규정 제7조]

15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사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 선거소송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단심제로 한다.
- ② 헌법재판소는 '군사시설'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이 항상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 ③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심리에 참여한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참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 ④ 비상계엄 시행 중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 법원에 속하게 되지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15 정답 ④

해설 : 최신판례가 역시 출제되었고 재판권을 1개월 연장한다는 판례는 중요판례로 어렵지 않은 문제로 보인다.

- ① 비례대표사도의원선거의 경우 대법원의 단심제이다. 나머지도 전부 단심제인 경우로 출제되었다.
- ② 군사시설에 항상 해당하는 구 군형법 제69조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중 '구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4호' 가운데 '구 군형법 제69조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의 손괴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헌재 2013.11.28. 2012헌가10)
- ③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 ④ 군법회의에 계속 중인 재판사건의 재판권이 일반법원에 속하게 되는 효력만이 1개월 이내의 기간 안에 단계적으로 발생

- ①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기업의 생성·발전·소멸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기업자유의 표현이며 국가의 공권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불개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이다.
- ②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은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③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기능하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 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
- ④ 소비자불매운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고,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

①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의 관련 규정은 현역 복무 중인 군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②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재판상 화해 조항에 의하면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이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③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반드시 모든 사건에 관해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 ④ 형사실체법상으로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는 문제되는 범죄 때문에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라 하더라도 헌법상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19 정답 ④

해설 : 형사 피해자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범죄피해자와 구별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답을 골라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 ① (헌재 2009.7.30, 2008헌바162)
- ②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위원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이 없는 등 독립성이 보장되어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보상액과 법원의 그것 사이에 별 다른 차이가 없게 된 점등을 볼 때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09.4.30, 2006헌마1322)
- ③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헌재 1997.10.30, 97헌바37 등)
- ④ 이는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범죄 때문에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라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헌재 2003.9.25, 2002헌마533)

20 교육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수목적고교에 비교평가에 의한 내신평가를 인정하고 그 시행에 따른 합리적인 경과조치를 정하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 ② 고졸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던 자는 해당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한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③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보다 우위를 차지하지만, 학교 밖의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
- ④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0 정답 ③

해설 : 정답 지문이 빈출 지문이라 정답을 쉽게 고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① (헌재 1996.4.25, 94헌마119)

- ② (헌재 2013.5.31, 2010헌마139)

- ③ 학교 교육의 범주 내에서는 국가의 교육권한이 헌법적으로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 (헌재 2000.4.27, 98헌가16 등)
- ④ 의무교육 무상에 관한 헌법규정은 의무교육의 비용에 관하여 학부모의 직접적 부담으로부터 전체 공동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그 공적 부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중립적이다. (헌재 2005.12.22, 2004헌라3)